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2
----------	-------

발의연월일 : 2026. 5. 20.

발 의 자 : 김재섭 · 조은희 · 우재준  
송언석 · 박수민 · 권영세  
김상훈 · 엄태영 · 고동진  
김용태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1호 중 “1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고”를 “하고,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 등 모든 투표소 입구 및”로 한다.

이 경우 최초 1회의 대담·토론회는 제158조에 따른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생략)</p> <p>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u>1회 이상 &lt;후단 신설&gt;</u></p> <p>2. (생략)</p> <p>③ ~ ⑤ (생략)</p> <p>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p>	<p>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 -----<u>3회 이상. 이 경우 최초 1회의 대담·토론회는 제158조에 따른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p>

